

양산시야구협회 관리단체 지정 사유서

■ 본회 정관 제9조 2항 각호(관리단체 지정 근거)

- 체육회의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한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때(9조2항1호)
 - 양산시야구협회(이하 “협회” 라 함)는 2024년도 총회결과 보고 및 양산시체육회(이하 “본회” 라 함)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자료(2021~2023 회계·결산 자료) 검토, 회계 관련 담당자 면담(2024. 2월 ~ 3월 사이)결과 본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7조(총회 구성 및 기능), 제9조(총회의 소집), 제14조(총회의 운영), 제47조(회계연도), 제48조(예산 편성 및 결산)위반임이 확인되었음.
 - 규정 위반의 세부내용
 - 2024. 2. 3(토) 17시에 개최되었던 협회 총회에서는 총회 개최의 일반적인 절차(7일전 안전, 일시 및 장소 통지)들이 지켜지지 않았고, 대의원 자격이 없는 협회 임원들이 안전 의결에 참여하여 안전 의결의 효력이 무효화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.
 - 차기년도 수입(리그참가팀 리그비)을 당해연도(7~8월)에 납부받아 집행하고 결산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으며, 총회의 결산서와 실제 협회의 잔고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를 총회에 의결함.
 - 본회 자료제출 요구(양산시체육회-489호, 2024.2.16.)에 의해 2021~2023년도 지출 증빙자료 검토 결과 다수의 지출 건이 증빙자료가 부실하거나, 아예 없는 건도 있으며, 예산 지출의 형식도 협회 직원 계좌로 송금하여, 협회 직원 계좌에서 다시 지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집행해 왔음.
 -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 공시(홈페이지)의무를 다하지 않음.

※회원종목단체규정 제7조(총회 구성 및 기능)

- ⑥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,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, 담당체육교사 또는 운동부 감독이 대의원이 된다.

※회원종목단체규정 제9조(총회의 소집)

- ① 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목단체의 회장이 소집

하여야 하며,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. 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(전자문서 포함한다)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※회원종목단체규정 제47조(회계연도)

종목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※회원종목단체규정 제48조(예산편성 및 결산)

- ①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(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)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
○ 60일 이상의 회원단체장의 결위 또는 사고(9조2항2호)

- 협회 이장호회장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임(2024. 3.15)을 했으나, 위의 예산 관련 규정 위반 건들에 대해 현재까지도 조사 중에 있으며,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가능성도 있어, 현 시점에서 직무대행 지정이나, 보궐선거를 실시하기가 현실상 어려움.

○ 해당 회원단체 내의 각종 분쟁(9조2항4호)

- 이장호회장과 협회 사무국의 박○○ 직원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을 벌이고, 노동부에서 언어적 성희롱 의혹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,
- 야구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협회 임원들 일부가 체육회의 통제·관리 속에서 사회인리그를 운영하고 있으나, 협회 내부 임원들 간의 분쟁으로 일부 임원이 협회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을 검토하는 등 계속해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.

○ 재정악화 등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(9조2항5호)

- 현재 남아있는 협회 예산은 사회인리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이고, 그 밖의 기존에 수행해 오던 전문체육팀 지원이나, 구장 관리 등, 기타 사업수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.

- 그리고 현재 지역사회 및 체육계에서의 협회 집행부(임원)에 대한 반감 및 불신이 높아 현 상태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움.

결론

- 본회 정관 제9조 2항 각호에 의거하여 양산시야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함.